

제정일	2024. 5. 2
주관부서	회계팀
결정권자	이사회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

한화엔진 주식회사

목 차

제1조 (목적)	3
제2조 (적용범위).....	3
제3조 (권한)	3
제4조 (의무)	3
제5조 (구성)	3
제6조 (해임)	3
제7조 (위원장).....	4
제8조 (회의 소집).....	4
제9조 (소집권자).....	4
제10조 (소집절차).....	4
제11조 (결의방법).....	4
제12조 (부의사항).....	4
제13조 (의사록).....	5
제14조 (간사)	5
제15조 (규정의 개폐).....	5

GS 05-00-00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4-05-02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화엔진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"공정거래법"이라 한다) 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계열회사 간 대규모내부거래를 사전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, 그 구성, 운영 및 권한,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내부거래 및 관련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한다.

제4조 (의무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,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(구성)

- ①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하고,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
제6조 (해임)

-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의 해임,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7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장 회의

제8조 (회의 소집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1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(부의사항)

- ①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,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, 유가증권, 자산 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 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
- ②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,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한 상품용역거래 중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100 억원 이상인 거래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래에서 거래목적, 거래상대방, 거래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%이상 증가 또는 감소(단, 상품 또는 용역거래의 경우 20%

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해당)할 경우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3장 보칙

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24-05-02)

이 규정은 202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